

201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안내

I. 2013년도 평가인증 운영체계 주요 변경 내용

내용구분		변경 전(2012년도)		변경 후(2013년도)
자체점검 상시화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	참여과정	4단계 (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심의)		3단계 (참여확정-현장관찰-심의)
	소요기간	신규인증 : 6개월 재인증 : 4개월		4개월
법적 사항 강화 (지자체의 기본사항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 4항목 - 총 정원 준수 -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 9항목 - 총 정원 준수 -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 <u>어린이집의 설치기준</u> - <u>보육실의 설치기준</u> - <u>보육교직원 배치기준</u> - <u>보육교직원 정기 건강검진</u> - <u>비상대피시설 설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항목 7항목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1점) - 보육실의 설치기준(1점)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1점) - 보육교직원 정기 건강검진(1점) - 비상대피시설 설치(1점) -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1점) -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항목 2항목 -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2점) -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민원사항(8점) 	
참여수수료	40인 이상 : 30만원 39인 이하 : 25만원		100인 이상 : 45만원 40인 이상 : 30만원 39인 이하 : 25만원	
현장관찰자 파견인원 조정	2인 파견		99인 이하 : 2인 파견 100인 이상 : 3인 파견	
현장관찰주간(일) 공지 여부	관찰주간 및 관찰일 사전 공지		- 2주간의 관찰주간 사전 공지 - 관찰일 미공지	
재참여 관련	수수료	-		일반참여의 50% 부과
	재참여 과정	신규인증 재참여 가능 재인증 재참여 가능		신규인증 재참여 가능 재인증 재참여 폐지
	기본 사항	필수항목 재확인		- 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재확인 - 기본항목의 경우 최초 참여시

	확인		평정점수를 반영하나, 이후(최초 참여확정 마감일~재점검 마감일) 추가 감점사항 발생 시 기 평정된 점수에 추가 반영
참여확인서 폐지		인증서, 참여확인서 및 현판 발급	인증서, 현판 발급
평가인증사후관리관련	신임원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방법 한국보육진흥원 대표메일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신청
	확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항목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 사례, 평가인증지표 중 33항목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건강과 영양, 안전 중 일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항목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운영형태별 평가인증지표 전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견인원 1인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견인원 2인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점검 결과반영 방법 총점 90점 미만인 경우 보육 컨설팅 제공하여 자체개선 지원 총점 80점 미만 또는 필수항목 미준수인 경우 보육 컨설팅 후 재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점검 결과반영 방법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이상 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 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연장(확인점검 점수 98점 이상 : 1년 연장, 95점 이상 : 6개월 연장)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미만일 경우 보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품질 관리 지원(80점 이상일 경우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함)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 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 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육 컨설팅 후 재확인점검 실시, 재확인 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 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 기간에서 6개월 감축 ※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이 될 때까지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유효기간 6개월씩 감축
인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취소되는 경우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 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 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p>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 운영형태 변경(지표 유형이 40인 이상↔39인 이하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p>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 <u>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u>
확인 방문	<p>▣ 확인방문 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 확인방문신청서, 변경인가증(앞뒷면) FAX로 제출 * 대표자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관계를 확인가능한 서류(변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도 함께 제출 	<p>▣ 확인방문 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u>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확인방문신청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 - 증빙서류 : 변경인가증(앞뒷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관계 확인 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관계를 확인 가능한 서류(변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도 함께 제출 	
	<p>▣ 확인방문수수료</p> <p>1인 파견 : 20만원 2인 파견 : 40만원</p>	<p>▣ 확인방문수수료</p> <p>1인 파견 : 20만원 2인 파견 : 40만원 3인 파견 : 60만원</p>	
	<p>▣ 확인방문자 파견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2인 파견 	<p>▣ 확인방문자 파견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99인 이하 : 2인 파견 100인 이상 : 3인 파견 	

※ 2013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또는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책자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Ⅱ. 2013년도 평가인증 운영체계

평가인증 과정은 신청단계 이후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3단계로 결과발표까지 진행된다.
평가인증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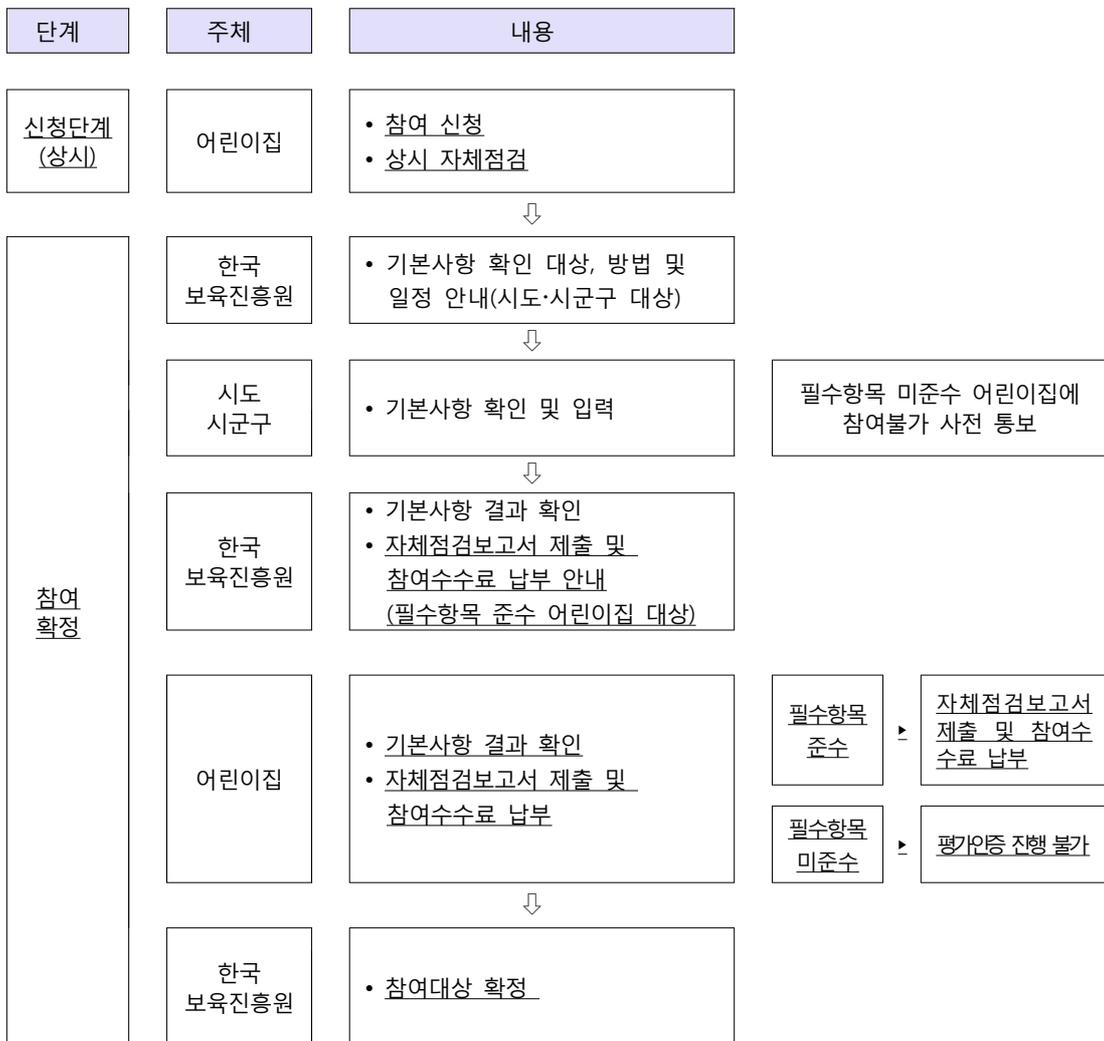


1 참여확정

참여확정 단계에서는 신청 어린이집의 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며 아래 “나. 참여확정 자격”의 조건에 충족하는 어린이집은 참여대상으로 확정된다.

가. 참여확정

- 2013년도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신청을 마친 어린이집은 신청한 기수의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아래 절차와 같이 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나. 참여확정 자격

-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이 종료된 어린이집, 동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에 한함
 -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
 -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 지자체의 기본사항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 ※ 필수항목 : 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 자체점검을 완료한 이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제출한 어린이집
- 신청완료 어린이집 중 상기 기본사항 확인 결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수별 모집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하면 참여대상으로 확정

다. 참여확정 절차

- 기본사항확인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해당 기수에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 아래의 기본사항(필수항목 9항목 및 기본항목 2항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보
 - 필수항목(9항목)

항 목	평정	평정기준
총 정원 준수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참고]
	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항 목	평정	평정기준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년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및 전년도 기록 검토
	미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비상대피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 기본항목(2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양호(2점)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세입, 세출)예·결산서 구비 : 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지출 기록 명확 : 영수증 - 수입 : 금융기관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 : 5만원 이상 카드결제, 1기관 1계좌 사용
	미흡(0점)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항목	평정	평정기준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민원사항	8점 만점에서 평정기준 에 따라 감점 처리	<p>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p> <p>-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민원사항 발생 시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발생시 : 건당 2점 감점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2점 감점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3점 감점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아동학대 : 건당 4점 감점</p> <p>*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 * 아동학대는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의 ④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 전체 감점 점수가 8점을 초과할 경우 8점까지만 감점 처리</p>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 신청한 어린이집은 기본사항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필수항목이 모두 준수된 경우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완료
- 기본사항확인 결과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의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

○ 기본사항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완료한 어린이집은 참여대상으로 확정

라. 참여수수료

-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
 - 참여수수료 : 100인 이상(45만원), 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
 -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에 따라 수수료 금액 적용
- 참여수수료 환불 :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음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이후
90%	50%	0%

* 참여확정 마감일은 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임

* 현장관찰자 파견 전 자체포기는 어린이집이 통보받은 현장관찰 주간 내 오후 5시(17시)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관찰자가 파견되기 전에 한함

② 현장관찰

현장관찰 단계에서는 참여확정 어린이집에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찰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가. 현장관찰자 파견

-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파견되며 현장관찰은 1일간 실시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2주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 없이 어린이집에 파견

나.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출석 기준 충족

- 현장관찰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가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관찰 당일에는 영유아 정원의 1/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현장관찰 진행이 가능함
- ※ 현장관찰일에 현원출석(정원의 1/3 이상 현원으로 재원, 현원의 2/3 이상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 취소됨

※ 방과후 아동이 있는 경우 정원 대비 현원 산정 및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정원 대비 현원 산정 : 인가정원에서 방과후 아동의 현원을 제외하여 산정
-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후를 제외한 현원의 2/3 이상
- (예시) 인가정원 55명인 어린이집(현원 33명 : 종일반 영유아 25명, 방과후 아동 8명)의 경우
 - 정원 대비 현원 산정 : 인가정원(55명) - 방과후 아동(8명) = 47명
 - 따라서 47명의 1/3 이상 = 15명 이상
 -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후를 제외한 종일반 영유아 현원(25명)의 2/3 이상
 - 따라서 25명의 2/3 이상 = 16명 이상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 : 08:30 ~ 09:30이며, 관찰종료 예정시간 : 16:30 ~ 17:30
- 현장관찰자는 관찰자 1인당 1개반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 전체를 관찰
- 현장관찰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
 - ※ 현장관찰 시 확인하는 문서는 대부분 현장관찰일 이전 3개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단,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문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현장관찰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상호 확인한 후 ‘현장관찰 상호확인서’에 서명

(상호확인서 항목)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우수/부적절 사례, 평가인증 관련 문서 구비 등

③ 심의

심의 단계에서는 현장관찰이 완료된 어린이집의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토대로 심의가 진행된다.

가. 심의기준

심의자료	심의기준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등	1.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3. 보고서 등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우수사례	부적절사례
	·1급 교사 비율 - (40인 이상) 전체교사의 50%이상 - (39인 이하) 전체교사의 40% 이상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놀이시설 또는 취사부 임용 - (40인 이상) 놀이시설 설치 검사 필, 또는 놀이시설 설치 의무 없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 (39인 이하) 취사부 임용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용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부적절 ·반별 초과보육 허용 범위 초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5.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	

나. 인증결정

- 인증결정은 자체점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를 반영하여 이루어짐

구 분	반영비율
자체점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
총 계	100%

-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는 2.25점(3.00점 만점)/75점(100점 만점)임
-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 인증과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
 - 인증 : 신규인증 및 재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
 - 인증유보 :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불인증 : 재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증결과	총 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이상
인증유보(신규인증) 불인증(재인증)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이상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 미달

- 신규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인증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할 수 있음

다. 인증유효기간

- 인증이 결정된 월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단, 재인증 사전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일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참여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

라. 인증서 및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발급

4 참여취소사항

가. 평가인증 과정 중 참여가 취소되는 경우

①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참여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아래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참여 취소)

- ①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 ②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 ③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외에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 재인증 참여과정 중 기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②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정원 또는 유형이 변경(40인이상↔39인이하, 40인이상-39인 이하↔장애아전문)되어 다른 지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로 동일한 경우 참여 유지 가능

③ 평가인증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관찰 시 발견한 부적절 사례가 심의기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현장관찰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

④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이상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재참여관리

- 신규인증 참여 어린이집 중 인증심의 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
- 재참여 단계별 절차

재참여신청 ⇒ 재점검기간(2개월) ⇒ 재관찰/재심의(1개월 내외) ⇒ 결과통보

- 재참여 신청
 - 지정된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 신청 및 재참여수수료 납부
 - 재참여수수료 : 100인 이상(23만원), 40인 이상(15만원), 39인 이하(13만원)
 - 환불 : 재참여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재참여신청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전**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이후
100%	50%	0%

* 재참여신청 마감일은 재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임

**현장관찰자(재관찰)파견 전 자체포기는 어린이집이 통보받은 현장관찰주간 내 오후 5시(17시)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관찰자가 파견되기 전에 한함

- 재점검
 - 시·군·구는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을 재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
 - ※ 기본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참여시 평정점수를 반영하나, 이후(최초 참여확정 마감일~재점검 마감일) 추가 감점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 평정된 점수에 추가 반영
 - 재참여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은 재점검기간 동안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보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점검보고서를 제출
- 재관찰/재심의
 -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어린이집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

- 가 미달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짐
-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를 재확인

○ 재참여 결과

- 재참여 인증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불인증일 경우 해당 참여과정은 모두 종료

재참여 인증결과	총 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이상
불 인 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⑥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음

인증발표 시기	1월 ~ 6월	7월 ~ 12월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상반기 (익년 5.1 ~ 6.15)	하반기 (익년 11.1 ~ 12.15)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품질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 취소 가능

나.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입 원장 교육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입 원장이라 칭함), 신입 원장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입 원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원장이 교체된 시점(임면 보고일 기준)부터 연속하여 개최되는 3회차 교육 중에서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 실시하여 인증 유지 여부 결정

연중 교육시기	매월 1회 실시
---------	----------

- 다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입원장 교육을 기 이수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면제대상 신청 기한	원장이 교체된 시점부터 연속으로 개최되는 3회차 교육 중 마지막 3회차 교육의 신청 마감일
------------	--

-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음

다. 확인점검

-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확인내용)** 평가인증 필수항목 중 3항목 및 부적절사례 5항목, 운영형태별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
- **(결과반영)** 확인 결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보육 컨설팅 연계 또는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8점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이상에서 98점 미만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연장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일 경우 보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품질관리 지원(80점 이상일 경우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함)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육 컨설팅을 제공한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

고, 재확인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이 될 때까지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 확인점검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자체로 통보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원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인증 유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인증 취소)

- ①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 ②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 ③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외에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⑤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로 동일한 경우 인증 유지 가능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 방문'을 실시하여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

⑥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⑦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원장이 변경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3개월)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취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결과통보일로 함

마. 확인방문

○ 확인방문의 신청

-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의 ⑦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아래 각 호별 신청 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확인방문을 신청하여야 함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소재지 또는 운영형태변경 : 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입원장교육 미이수 : 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확인방문신청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
- 증빙서류 : 변경인가증(앞뒷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관계 확인 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관계를 확인 가능한 서류(변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도 함께 제출

< 유의사항 >

- 확인방문의 미신청 또는 수수료 미납에 따른 인증취소
 - “라.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의 ⑦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정해진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증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 취소 처리

○ 확인방문 수수료

- 확인방문자 파견인원에 따라 1인/20만원, 2인/40만원, 3인/60만원
-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은 통보된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확인방문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될 수 있음
-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방문 참여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구 분	확인방문자 파견 전*	확인방문자 파견 이후
환 불	100%	0%

* 확인방문자 파견 전 자체포기는 확인방문 전일(영업일 기준) 오후 5시(17시)까지 어린이집이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 확인방문 실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 확인방문자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확인방문자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 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
 - 확인내용 : 평가인증 필수항목 중 3항목 및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
- 그 외 확인방문 사유 발생 시
 - 확인방문자 1인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
 - 확인내용 : 평가인증 필수항목 중 3항목 및 평가인증 지표 중 해당 영역
- 확인방문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재인증 과정에 참여중이면서 재인증 현장관찰을 받기 이전인 경우에는 확인방문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재인증 현장관찰 결과로 갈음한다

○ 인증유지 여부 결정

- 필수항목 준수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인증유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인증취소

○ 확인방문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확인방문 실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유지 또는 인증취소 사항을 지자체로 통보
-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